

취업애로청년층 대상기준

1. 인정범위

○ 취업애로청년층

- , 최저생계비 150% 이하(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), 소득 1~3분위, 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, 장애인, 여성가장, 국가유공자, 다문화가정자녀, 고졸미취업자

2.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제출 서류 및 발급처

지원대상자	확인(제출)서류	발급기관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	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주민센터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	· 차상위계층 확인서	주민센터
③ 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*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*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·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
④ 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	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	지방보훈청
⑤ 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	· 장애인복지카드	주민센터
⑥ 여성가장 * 배우자가 없는(사별 또는 이혼)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*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	주민센터 해당기관
⑦ 다문화가족 자녀 *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· 기본증명서(국적취득사실 기재)	주민센터
⑧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 * 최종학력 졸업 후 6개월 이상 미 취업자	·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· 국민연금가입사실증명서	교무처 국민연금

<참고>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

○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(기준 중위소득 60%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2017년 기준 중위소득	1,652,931	2,814,449	3,640,915	4,467,380	5,293,845	6,120,311	6,946,776
기준 중위소득 60%	991,759	1,688,669	2,184,549	2,680,428	3,176,307	3,672,187	4,168,066
건강보험료	60,695	103,346	133,694	164,042	194,389	224,737	255,085

※ 30세 미만은 부모까지 건강보험료 포함, 만 30세 이상은 단독 가구로 나왔을 경우, 해당 가구만 산출

※ 관련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27호 "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"